

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[별지 제12호의2서식] <개정 2021. 2. 26.>

[] 동물용의약품

[] 동물용의약품외품

수입업

[] 신고서

[]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·처리일	처리기간	25일				
신고인	영업소의 명칭(법인일 경우 법인 등록번호 :)							
	영업소의 소재지							
	성명	한자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			
	등록기준지							
	주소							
수입관리자	성명	면허번호						
	생년월일	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						
품목명								
겸업여부								
변경 내용								
항목	신고사항	변경신고사항	사유					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외품의 수입업을 신고합니다.								
년 월 일								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
담당자 성명								
담당자 전화번호								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								
신고인 제출서류	신고	1. 「약사법」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. 「약사법」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.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·설비내역서		수수료 30,000원 (변경 신고 5,000원)				
	변경 신고	1. 신고증 2.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					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약사 면허증(수입관리자가 약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)			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					
수입관리자 주민등록번호 : (서명 또는 인)			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	접 수	→	검 토 (필요시 현장확인)	→	결 재	→	신고증 발급 (변경사항 기재)
처리기관 : 농림축산검역본부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		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